

한사랑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 관련 규정 안내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준수 및 기관 운영규정 대외 고지

한사랑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규정에 명시된 '장기요양 이용계약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이용계약)를 충족하며 센터 내 비치된 운영규정(제140조~제150조의1)에 근거합니다.

1. 계약의 목적 (운영규정 제140조)

- **목적:** 이용자(수급자)와 시설(센터) 간의 계약 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상호 신뢰 하에 안정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계약 체결 원칙:**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직접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 **계약 시 첨부 및 제출 서류:**
 - 이용자 제출 서류: 장기요양 등급판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등
 - 계약서 첨부 서류: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변경기록지, 이용자의 권리 고지문,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2. 계약 기간 (운영규정 제141조)

- **기본 계약 기간:**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합의된 기간을 명시합니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 **등급 갱신 시 기간 조정:** 계약 기간 중이라도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기간은 새로운 등급판정서가 센터에 도착한 날까지로 자동 조정됩니다.

3. 서비스 이용료 및 변경 방법 (운영규정 제142조, 제143조)

- **이용료 산정 기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따르며, 본 시설 이용금액표에 의거합니다.
-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수급자 15% / 경감 대상자 9% 또는 6%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 **비용 변경 절차 및 사전 고지:**
 - 수가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최소 15일 전까지** 유선, 문자, 우편, 안내문 등으로 사전에 명확히 통지합니다.
 - 비급여 비용의 변경: 변경 적용 전월까지 이용자·보호자에게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계약의 재체결: 등급 변경, 본인부담률 변동, 서비스 시간·횟수 변경 시 즉시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재작성(변경 계약)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동의(서명/날인)를 받습니다.

[한사랑방문요양센터 이용금액표 (2026년 기준)]

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② 방문시간별 급여비용 및 자격별 본인부담금 (1회당 기본)

방문당 시간	총 급여비용	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초수급 (0%)
30분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전액 무료
60분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전액 무료
90분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전액 무료
120분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전액 무료
150분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전액 무료
180분 (3시간)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전액 무료
210분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전액 무료
240분 (4시간)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전액 무료

※ 야간·조조·휴일 가산 등 보건복지부 고시 가산 사유 발생 시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및 비용에 대한 명시]

- **비급여 항목 수납 여부:** 본 센터는 수급자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의 특성상 별도의 비급여 항목(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을 일절 수납하지 않습니다.
- 센터 운영규정(제142조, 제143조)에 의거하여 향후 개별 욕구에 따른 비급여 항목 신설 또는 비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적용 전월까지 고지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얻은 후 계약을 변경 체결합니다.

4.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운영규정 제144조)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및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해지 및 정지 (운영규정 제150조, 제150조의1)

• 계약 해지 사유:

1. 계약 기간이 만료한 때
 2. 이용자(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 통지 필수**)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시설의 해약 통지 기한:** 위 5호 내지 7호의 사유로 시설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한사랑방문요양센터